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4. 22.

경제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재형 의원 등 8명(김귀화, 서민우, 윤권근, 정창근, 배지훈, 박정환, 원종진)
- 발의일자: 2020. 2. 21.
- 회부일자: 2020. 4. 9.
- 상정 및 의결: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(2020. 4. 22.)

## 2. 제정이유

- 달서구 소재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 제고

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대상 및 사업, 신청·결정 및 취소 (안 제3조~제7조)
-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위원회 구성 등(안 제8조~제15조)
- 구청장의 지도·감독 등(안 제16조~제18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, 제13조, 제16조  
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47조의2, 제59조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 
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0. 2. 21. ~ 2020. 3. 2.)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김휘용)

-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 시설·환경개선과 지역브랜드 육성, 위생교육·홍보 등 지역 위생업소 육성 보조금 지원을 구체화 하고 있음
- 다만, 집행부에서 제시한 「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」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연임 제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6항에 따라 「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」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.

#### 6. 질의 및 답변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## 7. 토론요지: 집행부 수정의견 반영

#### 8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 중 “하며,”를 “하되, 두 차례만”으로 한다.

### <수정안 조문 대비표>

조례안	위원회 수정안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며</u> , 연임할 수 있다.	제10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- <u>하되, 두 차례만</u> ----.